

특별공급 청약안내 **신혼부부 특별공급**

☐ 청약 일정

구분	신청일자	접수장소 및 시간	신청방법 및 유의사항
신혼부부 특별공급	2022.06.14.(화) ~2022.06.15.(수)	• 청약Home 인터넷 09:00 ~ 17:30	•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(www.applyhome.co.kr) 또는 청약홈 모바일 앱에서 신청(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에서 "청약홈" 검색)

☐ 주택형별 대상 세대

구분	84A	84B	84C	합계
신혼부부 특별공급	89	44	5	138

☐ 신청대상자 및 유의사항 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1조)

구분	내용																				
신청 자격 (각 항목 모두 충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(혼인신고일기준, 재혼 포함) • 무주택세대구성원 (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(2018.12.11. 시행) 부칙 제5조(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특례)에 따라 2018.12.10.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(혼인신고일 이전 등기완료분에 한정)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한 경우 2순위로 신청 가능 •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(지역별/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 •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% 이하(맞벌이 160% 이하) -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% 초과(맞벌이 160% 초과)하는 경우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(토지 및 건물)의 합계액이 33,100만원 이하 																				
당첨자 선정 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득 및 자산기준 우선배정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분</th> <th rowspan="2">공급비율</th> <th colspan="2">소득기준</th> <th rowspan="2">경쟁발생시 우선순위</th> </tr> <tr> <th>외벌이</th> <th>맞벌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우선공급</td> <td>50%</td> <td>100% 이하</td> <td>120% 이하</td> <td rowspan="3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순위 :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가 있는 자(임신 중, 입양자녀 포함) • 2순위 : 1순위가 아닌 자(무자녀 또는 상기 신청자격의 2순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) </td> </tr> <tr> <td>일반공급</td> <td>20%</td> <td>140% 이하</td> <td>160% 이하</td> </tr> <tr> <td>추첨제</td> <td>30%</td> <td>140% 초과</td> <td>160% 초과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•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(음성군)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(임신 중, 입양자녀 및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포함) ③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 	구분	공급비율	소득기준		경쟁발생시 우선순위	외벌이	맞벌이	우선공급	50%	100% 이하	120% 이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순위 :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가 있는 자(임신 중, 입양자녀 포함) • 2순위 : 1순위가 아닌 자(무자녀 또는 상기 신청자격의 2순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) 	일반공급	20%	140% 이하	160% 이하	추첨제	30%	140% 초과	160% 초과
구분	공급비율			소득기준			경쟁발생시 우선순위														
		외벌이	맞벌이																		
우선공급	50%	100% 이하	120% 이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순위 :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가 있는 자(임신 중, 입양자녀 포함) • 2순위 : 1순위가 아닌 자(무자녀 또는 상기 신청자격의 2순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) 																	
일반공급	20%	140% 이하	160% 이하																		
추첨제	30%	140% 초과	160% 초과																		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,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,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. 																				

☐ 전년도(2021년)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

공급유형		기준	3인 이하	4인	5인	6인	7인	8인
우선공급 (기준소득,50%)	배우자 소득 X	100% 이하	~6,208,934원	~7,200,809원	~7,326,072원	~7,779,825원	~8,233,578원	~8,687,331원
	신혼부부 모두 소득 O	120% 이하	6,208,935원~7,450,721원	7,200,810원~8,640,971원	7,326,073원~8,791,286원	7,779,826원~9,335,790원	8,233,579원~9,880,294원	8,687,332원~10,424,797원
일반공급 (상위소득,20%)	배우자 소득 X	100%초과 ~140%이하	6,208,935원~8,692,508원	7,200,810원~10,081,133원	7,326,073원~10,256,501원	7,779,826원~10,891,755원	8,233,579원~11,527,009원	8,687,332원~12,162,263원
	신혼부부 모두 소득 O	120%초과 ~160%이하	7,450,722원~9,934,294원	8,640,972원~11,521,294원	8,791,287원~11,721,715원	9,335,791원~12,447,720원	9,880,295원~13,173,725원	10,424,798원~13,899,730원
소득기준 초과/ 자산기준 충족 (추첨제,30%)	배우자 소득 X	140%초과 부동산가액(3.31억) 충족	8,692,509원~	10,081,134원~	10,256,502원~	10,891,756원~	11,527,010원~	12,162,264원~
	신혼부부 모두 소득 O	160%초과 부동산가액(3.31억) 충족	9,934,295원~	11,521,295원~	11,721,716원~	12,447,721원~	13,173,726원~	13,899,731원~

- 기준소득 :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,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%초과시 일반공급 20%(상위소득)을 선택하여야 합니다.
- 상위소득 :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.
- 추첨제 :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은 초과하나,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(33,100만원) 이하여야 합니다.
- ※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인인자(만19세 이상)의 합산 소득입니다.
- ※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합니다. (단,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)

※ 상기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단순 참고용으로,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청약홈 청약제도 안내, 관계법령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) 등의 내용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

특별공급 청약안내 **신혼부부 특별공급**

▣ 구비서류 (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가능)

※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등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하여야함.

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"주민등록번호",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 및 "주소변동이력"등 모든 항목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람.

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.

※ 아래 서류 외 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.

※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4조에 의거, 당첨자 서류는 최대 5년간 보관하여야 하므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
(보관기간 : 입주자로 선정된 자 5년,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6개월 / 이후 파기)

구분	필수	추가	해당서류	발급기준	유의사항
공통 서류	○		신분증 사본	본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※ 외국인의 경우 :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	○		인감증명서 (본인서명사실확인서)	본인	• 용도 : 아파트 계약용(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)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•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(본인 발급 기준 참조 "전체포함"으로 발급)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 : 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• "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"까지 지정하여 발급 ※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	○	복무확인서	본인	•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※ 군 복무기간(10년 이상) 명시	
신혼부부 특별공급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본인 및 배우자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
	○		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	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	• 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성년인 세대원 전원 제출 (발급처:국민건강보험공단) -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 포함 [※ 과거 3년이상의 변동사항,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]
	○		소득증빙서류	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	• 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성년인 세대원 전원 제출 -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 포함 (다음 페이지의 소득증빙 제출서류 참고)
	○		기본증명서	자녀	• 자녀의 출생신고일 증명 필요시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•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 (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)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공개 "상세"로 발급
	○	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•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,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) 제출 (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)
	○		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•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
	○	자산보유 확인서류 (추첨제 신청자)	본인 및 세대원	•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 (다음 페이지 자산보유 확인 제출서류 참고하여 발급)	
부적격 소명자료	○		무주택소명자료	해당주택	•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 •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• 멸실·철거예정 증명서,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•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○		기타	-	•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 자료

특별공급 청약안내 **신혼부부 특별공급**

▣ 자산보유 확인 제출 서류 (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가능)

필수	추가	해당서류	발급기준	유의사항
○		부동산소유현황	본인 및 세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 •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주민등록번호 공개로 발급) ※ 부동산 미소유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"부동산 소유현황 조회내역 없음" 화면 출력 - 반드시 회원가입 및 회원 로그인 후 전체화면 출력 (비회원 조회 불인정)
	○	개별공시지가	본인 및 세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부동산소유현황 조회시 토지를 소유한 경우 -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→ 개별공시지가 조회 후 출력
	○	토지등기부등본	본인 및 세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부동산소유현황 조회시 토지를 소유한 경우 -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→ 등기부 등본 출력
	○	시가표준액	본인 및 세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부동산소유현황 조회시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- 위택스 → 지방세정보 시가표준액 조회 후 출력

▣ 소득증빙 제출서류

※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가구당 소득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전원의 합산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여야 합니다.
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

해당자격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	
근로자	일반근로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직증명서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•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•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증명서 ('매월신고납부대상자확인'으로 발급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당직장 • 해당직장/세무서
	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직증명서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•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(직인날인)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•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(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당직장 • 국민연금공단
	전년도 전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직증명서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•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당직장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(학원강사, 보육교사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직인 날인된 월별급여명세서(근로소득지급조서) 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당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• 사업자 등록증 사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세무서
	법인사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• 법인등기부등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세무서 • 등기소
	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 증명미 발급되지 않는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(매입, 매출 기재된 부분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민연금공단 • 세무서
	신규사업자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또는 예정 신고서(매입, 매출 기재된 부분)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민연금공단 • 세무서
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서 •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당직장 • 세무서 	
국민기초생활 수급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민센터 	
비정규직, 일용직 근로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계약기간 및 총 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직인날인)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(직인날인) • 위 내용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당직장 • 국민연금공단 	
무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비상업자 확인각서 1) 전년도 소득이 없고,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2) 전년도 소득이 있으나,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※ 1)의 경우 전년도 사실증명(신고사실 없음)을 반드시 제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견본주택 비치 • 국제형 홈택스 	
기타 (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결정통지서(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) •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 (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등 • 해당직장 	